

2025년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영천시 금호읍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 고취를 위해 금호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『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』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사업개요(요약)

- 가. 사업목적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- 나. 모집기간 : 2025. 1. 24.(금) ~ 2025. 2. 28.(금) 18:00
- 다. 협약기간 : 협약체결 ~ 2025. 11. 30.
- 라. 지원금
 - 청년창업 : 최대 70백만원
 - 이전기업/스케일업: 최대 200백만원
- 마. 모집정원 및 자격요건

구분	모집 정원	자격요건	
		대상	세부내용
■ 청년창업	00	영천시 외 타 지역 청년 (만19~45세)	-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- 1년 이상 타지역 소재지 사업장 및 거주 청년 - 타 창업 관련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
■ 이전기업	00	영천시 외 타 지역 기업	- 제조업 - 1년 이상 타지역 소재지 기업
■ 스케일업	00	영천기업 청년 대표자 (만19~45세)	- 제조업 - 1년 이상 영천에 소재한 기업

- ※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영천시 “금호읍” 으로 대표자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이전 및 유지 3년 필수(단, 스케일업 기업 대표자 영천 시민인 경우 거주지 주소이전 해당 사항 없음)
- ※ 심사 요건(자격요건 및 점수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

II

지원유형

가. 지원금 및 지원내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최대 지원금	지원내용
■ 청년창업	70	- 창업공간, 시제품 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 - 1차년 최대 4천만원 + 2차년 최대 3천만원
■ 이전기업	200	- 인프라 구축, 연구개발, 시제품 제작 등 정착지원비 - 1차년 최대 2억원
■ 스케일업	200	- 신제품 개발, 제품고도화, 설비 및 제조공장 임대 등 성장지원비 - 1차년 최대 2억원

나. 사업비 계상 및 세부 지출

비목	세목	세세목	설명	비고
인건비	내부인건비		기존인력(현물 계상) · 신규인력(현금 계상) 인건비	총사업비 30% 이내
	외부인건비		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(용역 인건비)	
직접 사업비	연구 장비 · 재료비	시설·장비 운영비	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, 공장, 교육장, 기자재 임차, 시험 분석비 등 사업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※ 보증금 불가, 영천시 금호읍 지역에 한정, 임대차 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기간 내만 사용 가능	
		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※ 사업종료 1개월 전부터 사용 지양	
		제품디자인비	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시 적용된 제품디자인비	
	연구 활동비	도서인쇄비	원고료 : 개발 또는 사업관련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인쇄비 : 결과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 인쇄비	
		홍보·마케팅비	신문광고, 브로셔, 리플렛 제작, 전시참가비 등	
		연구용역비	시제품제작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 ※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,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금금 지출 가능, 시제품 판매 불가	
		회계감사비	사업 회계정산 수수료 ※ 사업비 책정 필수	
	연구 과제 추진비	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	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(지원기업 관련기술, 인사, 노무, 재무분야 등) 국내외 훈련, 자료구입, 학회 참가비 등 ※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총사업비 20% 이내
		국내 여비	사업 관련 국내 출장비용 ※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직접비 10% 이내로 산정
			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	
회의비	사업관련 회의 다과비, 식대 ※ 외부기관(기업) 참석, 사진, 서명 必			
간접 사업비	간접비	연구지원비	연구실 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연구윤리활동비	직접비 6% 이내
		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	관련 학회 참가비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

다. 추진일정

사업공고모집	선정 평가	과제협약체결	과제수행	모니터링	결과평가위원회
25년 1~2월	25년 3월	25년 4월	25년 4월 ~25년11월	25년 8~9월	25년 12월
신청 및 접수	⇒ 선정 평가 (발표)	⇒ 경북TP ↓ 기업	⇒ 세부사업 과제수행	⇒ 수행현황 점검	⇒ 결과평가 (발표)

III 지원대상

가. 청년창업

1)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(만 19~45세)의

예비 창업자(선정 후 사업자 제출)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
※ 청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

※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기준은 공고일 전 관외 주소를 둔 자
(등본 또는 초본으로 판단)

2) 청년창업 모집 분야

분 야	대 상 업 종
지식창업	지식 콘텐츠, 마케팅홍보, 디자인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
6차산업 연계 창업	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, 제조업, 판매업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식당, 카페, 스마트스토어 등 소상공인 창업 등
기술창업	기계, 재료, 전기.전자, 정보통신, 화공, 섬유, 생명, 식품, 환경, 신재생에너지,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등

나. 이전기업 : 타 지역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 기업

※ 타 지역 1년 이상 기업 기준은 공고일 전 관외 주소를 둔 기업
(사업자등록증 기준 판단)

다. 스케일업 : 영천시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영천 소재의 제조 기업

※ 영천시 소재 1년 이상 기업 기준은 공고일 전 관외 주소를 둔 기업
(사업자등록증 기준 판단)

라. 사전지원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 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④ 중소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특히,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신청 불가.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

⑤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(기업)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⑥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(기업)

⑨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(기업)

⑪ **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신청자**

⑫ 협약에 필요한 선급금 보증보험 제출이 불가능한 자(기업)

IV

세부지원내용

가. 청년창업

1) 지원내용

- 사업화 자금으로 편성된 창업 인프라, 특허 출원 및 등록, 시제품 제작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 및 전문가를 1:1 매칭하여 창업 및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
2) 지원 대상

-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(만 19~45세)의 예비 창업자(선정 후 사업자 등록 및 제출)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
3) 지원금 : 당해 최대 40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부담)

※ 당해연도 사업 결과평가 후 2차년 30,000천원 추가 지원

(기업당 최대 70,000천원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<청년 창업 예시>



◆ 청년식당 창업

: 영천시 금호읍에서 재배되는 마늘, 작약 등의 한방약재를 이용한 계절 특색에 맞는 퓨전 음식점 창업

◆ 모임카페 창업

: 영천시 청년 및 기업가들의 모임 및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,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주스 판매

◆ 스마트 스토어 창업

: 금호읍 지역의 교통 및 물류창고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, 가공식품, 캐릭터 상품 등의 온라인 제품 판매

나. 이전기업

1) 지원내용

- : 이전을 위한 공장, 사무실 등의 공간 임대료 및 장비 설비 임차비를 지원하며, 그 외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재료, 시험인증, 특허 등록 및 출원비 등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

※ 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금호읍으로 주소이전(임직원 등) 필수

2) 지원 대상

- :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 기업

3) 지원금 : 최대 200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부담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다. 스케일업

1) 지원내용

: 영천지역 내 기업으로 제조공장 확장, 설립, 제품고도화 등을 통한 스케일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, 제조공장 및 설비 임대료 지원

※지원금 5천만원 당 1명 금호읍으로 주소이전(임직원 등) 필수

2) 지원 대상

: 영천시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영천에 있는 제조 기업

3) 지원금 : 최대 200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 부담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라. 공통사항

- ‘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’ 으로 주거임차비 지원 가능

(단, 사업자등록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지원 가능)

V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(1차) 서류 평가

- 1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중복성 여부
- 2)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,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제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(온라인, 유선 등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반드시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함
- 4) 1차 서류평가 시 2배수 선정(개별 메일 통지)

나. (2차) 대면 평가(대표자 필수 참석)

- 1) 평가 방법 : 발표 평가(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통한 판정)
- 2) 사전검토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
- 3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- 4) “최종선정” 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(과제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 시, 70점 이상인 과제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협약 진행가능

다. 기타 준비 및 확인 사항

- 1) 선정(대면) 평가위원회 발표자료
가) 제출기한 : 평가 1일 전 메일 제출
※예시)평가일 12일→제출일 10일 24시 까지
나) 발표자료 : 자유양식
- 2) 선정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, 교육, 기타 이웃사촌 관련 행사 필수 참석
※ 차년도 신청시 평가 사항

라. 최종 결과평가

- 1) (평가위원회 평가)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※ 평가등급 : 성공, 보완, 실패, 최종 평가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
- 2)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비 “인정” 또는 “환수” (전액 or 일부)
- 3) (평가위원회 재평가)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“평가보류” 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VI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가. 모니터링(진도점검)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(기업)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함.
- 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불가피하게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
나.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협조

- 1) (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
- 2) (사후관리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 및 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, 관리기관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3) (이전유지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초 협약 시 이전한 거주지 및 사업장을 최초협약일 기준 3년간 유지(금호읍 내 이전은 가능)해야 하며, 관리기관에서 관련 자료(주소 및 사업장 증빙서류 등)제출 및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.

VII

사업 운영관리

가. 사업비 구성 :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(현금 필수) 포함한 금액으로 함(현물은 선택 사항임)

※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지원,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 필수) 이상으로 함
(예시 : 지원금 4,000만원 + 기업부담금 400만원 = 사업비 4,400만원)

나. 협약의 체결 및 수행 결과 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

- 1) (협약 준비)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, 수정 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

제출서류

- ① 사업계획서(최종본)
- ② 사업비 청구서
- ③ 주관기관 현물출자확약서
- ④ 사업비 통장사본
- ⑤ 법인인감증명서(해당시)
- ⑥ 선금보증보험((구)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) :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제출

- 2) (협약 체결)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

※ 선정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, 교육, 기타 이웃사촌 관련 행사 필수 참석

- 3) (사업비 지급 및 사용)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지급하며, 사업 기간 내 집행해야 함(현금인출 및 자산취득(물품 및 장비 등 자산성 구매) 불가)
- 4) (수행결과보고서 제출) 지원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일 전까지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제출함

VIII

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5. 1. 24.(금) ~ 2025. 2. 28.(금) 18시 까지

나.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제출(제출서류 일체 압축파일로 제출)

접수처	https://www.gbtp.or.kr
문의처	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그린기업지원센터 최준혁 연구원 (☎054-339-3353)

다. 제출서류

1) 청년창업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-1) 지원사업 상세계획서(한컴오피스)	1부
	② 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1부
	④ 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약약서	1부
	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
	⑥ 사업자등록증	1부
	⑦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홈텍스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) ※ '사업자등록증명원'과 다른 서류이며, 발급 시 필수 확인 요망	1부
	⑧ 주소이력 확인이 가능 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	1부
해당시	⑨ 최근 3년(21~23년) 재무제표 ※ 이전기업 및 스케일업 신청기업은 필수 제출 ※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	1부
	⑩ 공장등록증	1부
	⑪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1부
	⑬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	1부

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⑤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, ⑥사업자등록증 제외

※ 1인기업의 경우 ⑤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없을 시 제외

※ 참고사항

가.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'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나.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
다. [사업비=지원금]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

-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
-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,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
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-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- 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영천시 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)

라. 사업비용, 협약위배,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
마. [모니터링 및 진도점검]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
바.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의 소유로 함

사. [사후관리]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